

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간산업안정기금의 권리·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)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기간 종료시 지체 없이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·의무를 국가가 승계하고,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청산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운용기간 종료 시점의 기금의 재산목록, 권리·의무 내역 및 대차대조표
2. 기금의 권리·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는 시기, 절차, 방법
3.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, 절차, 방법

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청산계획서에 따라 기금의 권리·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도록 하고,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조(기간산업안정기금의 권리·</u> <u>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) ① 한</u> <u>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</u> <u>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</u> <u>다)의 운용기간 종료시 지체 없</u> <u>이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·의무</u> <u>를 국가가 승계하고, 잔여재산을</u> <u>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계</u> <u>획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</u> <u>기금운용심의회에 승인을 받아</u> <u>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의 청산계획서는 다음</u> <u>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1. 운용기간 종료 시점의 기금</u> <u>의 재산목록, 권리·의무 내역</u> <u>및 대차대조표</u> <u>2. 기금의 권리·의무를 국가가</u> <u>승계하는 시기, 절차, 방법</u> <u>3.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,</u> <u>절차, 방법</u> <u>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청산</u>

계획서에 따라 기금의 권리·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도록 하고,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